

# 정 관

학교법인 월광학원

# 정관연혁

연번	인가년월일	변경내용	인가근거	비고
1	2013.6.27.	신규설립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예산과-8293	
2.	2015.8.16.	제18조의 2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인 으로 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⑤ 학 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 임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보고	(개방이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  (신설)
3	2016.3.13.	별지 기본재산목록	광주광역시 교육청 보고	토지 122㎡ 건축연면적 256.08㎡ 증가
4	2018.7.16.	수익사업 추가 - 임대업, 태양광발전업 후원회 조직 추가 교육용기본재산 추가(중등)	광주광역시 교육청 보고	○ 수익사업 추가 - 임대업, - 태양광발전업 ○ 후원회 조직 추가 ○ 교육용기본재산 추가(중등) - 토지 : 57,088㎡ - 건물 : 14,312.43㎡
5	2022.2.15.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면 수정 교육용기본재산 수정(중등)	광주광역시 교육청 보고	○ 중등 토지 증가 57,088㎡ →57,473.7㎡
6	2023.4.21.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면 수정	광주광역시 교육청 보고	○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변경 (제9조,제67조, 제75조,제78조) ○ 임원선임 제한기간 확대(제19조) ○ 이사회 소집 사전 공지 의무화(제26조) ○ 사무직원 당연퇴직 조항 변경(제59조)

연번	인가년월일	변 경 내 용	인 가 근 거	비 고
7	2025.3.7.	<p>학교의 소속 지자체 조례를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수정</p> <p>학교별 일반직 정원 기준 수정</p>	<p>광주광역시 교육청 보고</p>	<p>o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변경 (제68조)</p> <p>o 일반직 정원 기준 변경 (제66조)</p>

# 학교법인 월광학원 정관

제정 2013. 6.27. (행정예산과-8293)

제1차 개정 2015. 8.16.(월광학원이사회)

제2차 개정 2016. 3.13.(월광학원이사회)

제3차 개정 2018. 7.16.(월광학원이사회)

제4차 개정 2022. 2.15.(월광학원이사회)

제5차 개정 2023. 4.21.(월광학원이사회)

제6차 개정 2025. 3. 7.(월광학원이사회)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순수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인은 학교법인 월광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월광기독교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초등과정 6년
2. 중학교과정 3년
3. 고등학교과정 3년

**제4조(주소)**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31번길 7(화정동)에 둔다.

**제5조(정관의 변경)** ①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장 자산과 회계

### 제1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에 규정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법인의 경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③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④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②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년간 공개한다.

## 제3장 기 관

### 제1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이사장 1명, 개방이사 3명 포함)
2. 감사 2명(추천감사 1명 포함)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해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을 기재한 인적사항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②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한다.
- ④ 필요시 관할 교육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개방이사의 자격)** ① 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 1.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
  - 2.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 ② 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 1. 학교법인의 설립자
  - 2.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3.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 4.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 ③ 필요시 관할 교육청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안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한다.

-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16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교육감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제18조(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월광기독교 학교 운영위원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 2.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명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사 정수의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따른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직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 사립학교법 제20조2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 3. 사립학교법 제54조2에 따라 교육감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된 자

**제20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1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제2절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

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 특례)**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 제4장 수익사업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예금이자 수입
2. 임대업
3. 태양광발전업
4. 기부금 수입(후원회 등)

## 제5장 해산

**제3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는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장 교직원

### 제1절 교원

**제33조(임용)** ①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교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 아닌 교감을 포함한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④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제34조(전형결과의 공개와 보관)** ①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다.

**제35조(기간제교원)** ①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의 임용권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37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7.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 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38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

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7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37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7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 6의2. 제37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7. 제37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37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7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7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인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이 끝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휴직교원의 처우)** 제37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 보수는 관련 법령 및 내부 보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된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면직)**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나 학교를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허위 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학급 및 학생의 감소로 학교 경영이 어려울 경우 교원을 감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교원을 감축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43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따른다.(단, 교장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의2(원로교사)** 제43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44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법인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45조(특별승진)**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7조(인사위원회의 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
2. 신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교원 보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교감 또는 교사의 자격연수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교원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인사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 및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특정인의 인사에 관계되지 않는 인사 기준 등 제도적인 사항에 관한 회의 내용은 공개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3조(세칙)** 인사위원회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 ① 비위 교원에 대한 적법한 징계를 위해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 절차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장 제3절 징계와 같은 법 시행령 징계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제2절 사무직원

**제55조(자격)**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임용)** ①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해당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②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사무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7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할 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법인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9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을 따른다.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

**제60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의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장 직 제

### 제1절 법 인

**제61조(법인 사무조직)**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두며, 법인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이사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인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후원회 회칙」에 의한다

### 제2절 초등학교

**제62조(교장 등)** ①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3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둔다.

### 제3절 중·고등학교

**제64조(교장 등)** ①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⑤ 사무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5조(하부조직)** 사무기구에는 행정실을 두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둔다.

## 제4절 정 원

제66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6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법인에서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8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를 적용하여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6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자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이내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가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⑧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③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사람으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사람, 당해 학교가 소재 하는 지역을 사

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7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제73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한다.

3.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제7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74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 소집 시기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의 소집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따른다.

**제75조(기능 등)**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해당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중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을 따른다.

**제76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사유 발생 시 시정을 명할 것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77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규정 또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78조(지원·지도 등)** 법인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그 설치 취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건학이념 구현에 저해되는 운영을 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9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0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기 타

제81조(공고)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8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3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김유수	1947.11.9	4 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27-2 모아타워 102동 1514호
이 사	이영팔	1959.3.15	4 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22-2 골든뜨레빌 103동502호
이 사	최승철	1955.8.17	4 년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07-13
이 사	승동민	1947.1.2	4 년	광주광역시 서구 마재로 57 주은아파트 101동402호
이 사	노완기	1957.3.6	2 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백운휴먼시아 102동 2203호
이 사	이민석	1955.4.10	2 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럭키아파트 3동 1002호
이 사	박재완	1964.2.26	2 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쌍용아파트 103동 202호
이 사	고점남	1959.2.10	2 년	광주광역시 남구 서대문로749번길35 101동 402호
이 사	손천수	1968.6.20	2 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모아타워 101동 1005호
감 사	허순규	1952.1.7	3 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928-2 금호타운 101동 403호
감 사	최진석	1969.1.1	1년6월 (1.5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8

###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7조의2제5항의 개정 규정 시행일 전에 선임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직원 정원

총 계	1 명
일반직 계	1 명
5급(사무국장)	1 명

별표 2.

학교별 일반직 정원 및 배치 기준표

구분	직종	일반직							계	
	직군	행정				기술				
	직렬	교육행정				시설관리				
학교별	직급	5급 (국장)	6급 (실장)	7급 (팀장)	8급 (과장)	9급 (대리)	7급 (팀장)	8급 (과장)	9급 (대리)	
초등학교			1		2					3
중·고등학교			1	1	2					4
계			2	1	4					7

별지

## 기본재산목록

### 1. 교육용기본재산

#### 가.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등기부상의 소유자	비고
광주 서구 화정동	425-6	대	2,339	학교법인 월광학원	초등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1167번지 외 7필지	학,전, 임,답	57,473.7	학교법인 월광학원	중등
계			59,812.7		

#### 나. 건 물

소재지	구조	면적 (㎡)	등기부상의 소유자	비고
광주 서구 염화로 23-20	철근콘크리트 구조 경사지붕	3,489.29	학교법인 월광학원	초등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1167	철근콘크리트 구조(3개동)	14,312.43	학교법인 월광학원	중등
계		17,801.72		

### 2. 수익용기본재산

#### 가. 현 금

계좌번호	예치은행	금액(천원)	비고
141-130-354868	광주	100,000	